

2026 B the B 뷰티 기반 융복합 콘텐츠 전시(다운타운) 팝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안내

□ 서울경제진흥원 민간협력사업 집행기준에 따른 '사업비(기관부담금)의 구성 및 계상기준'

- 사업비는 SBA의 “사업지원금”과 협약기관이 출자한 “기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 “기관부담금”은 협약기관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현물 또는 현금을 함께 계상하여야 하며, 인건비만으로 계상해서는 아니된다.
- “기관부담금” 중 인건비는 현물로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하며, 사업 담당자는 참여하는 인력의 수준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이를 살펴야 한다.
- “기관부담금” 중 장비, 부동산 등을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담당자는 인정 기준 및 계상 방법 및 정산방법 등을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기관부담금” 중 별도의 계상기준이 없는 무형적 자산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 그 외 기관부담금의 구성 및 계상기준은 개별 민간협력사업의 목적 및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별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인건비’는 현물로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계상한다. 단, 행정안전부 인건비 기준단가는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협약기관의 인건비는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따라 1인당 월 임금의 100% 이내에서 증감하여 계상할 수 있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 별도의 계상 기준이 없는 무형적 자산에 해당하는 공간 연출, 홍보마케팅 등은 협약기관별 서비스 비용을 고려하여 계상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단, 계상 항목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 보고가 가능하고, 사업 운영 목적과 부합하는 비용에 한해 인정한다.
- ‘기타 운영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계상한다.
- 그 외 사업비 구성 및 계상 기준은 협약 추진 목적 및 협약 대상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SBA 사업비 집행 가능 항목 및 사용 기준

구분	세부 항목
공간 조성 및 연출	팝업 공간 기획 및 연출, 시공, VMD 등 공간 조성비 일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팝업 연계 온오프라인 프로모션비 일체 - 런칭행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운영 등
개발 및 제작비	기획 상품·패키지·굿즈 등 팝업용 상품개발, 디자인 및 제작비 일체
※ SBA 사업비 내 집행 불가 항목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 식대, 음료, 다과 등 복리후생비성 및 후원비성 경비 - 노트북, 카메라, 컴퓨터 등 범용성 자산 취득 비용 - 직원 급여, 고용보험 등 상시 운영 인건비 - 간이 영수증, 개인 신용카드 결제 등 인정 불가능 영수증 -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 협약체결 이전 사용 비용 등	

□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 사업비 집행의 책임은 사업비를 집행한 당사자로 하며, 공통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각자 집행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를 지급 받는 대상은 별도의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하며, 해당 통장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관은 사업비 전용 통장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SBA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기관의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협약기관의 다른 통장으로 지출한 이후 증빙을 통해 현물로 인정받아야 한다.
- “기관부담금” 중 인건비의 산정은 타 사업과 합산하여 참여율 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는 이를 유효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 기준

- 사업비의 정산은 ‘서울경제진흥원 민간협력사업 정산 일반기준’에 따른다.
- 사업종료 시 협약기관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전용통장의 이체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은 서울경제진흥원 재무팀에서 선정한 SBA 지원사업비 정산 및 평가 회계법인으로 정한다.
- 정산은 협약기관이 출자한 기관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비를 집행한 기관에서 정산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 사업담당자는 사업비 집행기관이 제출한 정산내역 중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보완 요청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 시 이를 불인정하여야 한다.
- 협약기관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인건비에 대하여서는 개별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여 정산한다.
- 협약기관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무형적 자산에 대하여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정산을 같음하고, 사업담당자는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사용내역에 관해서는 불인정하여야 한다.
- 협약기관은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집행 이전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사업담당자는 이를 불인정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자는 정산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집행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비영리기관, 해외기관, 또는 개별 협약의 특수성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다. 또한 대가관계가 있는 민간협력사업의 경우 SBA 사업지원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협약기관으로부터 발행받아야 한다.
- 협약기관은 활동비 및 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협력사업의 수행 연관성을 소명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는 소명되지 않는 활동비 및 추진비는 불인정하여야 한다.